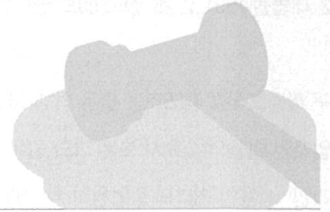


# 환경분쟁조정사례

## 양벌규정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행위자가 누구인지 여부



### 허범행 | 법무법인 태운 대표변호사

한국의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석사, 행정법전공), 한국의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재학(행정법전공)  
 환경보전협회 자문변호사, 원주지방환경청 자문변호사, 한강유역환경청 자문변호사, 인천경기기계공업협동조합 자문위원,  
 KNJ엔지니어링 등 다수의 환경기업 고문변호사  
 tel. 02-584-2770 | h9332@hanmail.net

### 들어가며

환경관계법 및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은 이른바, 양벌규정을 두어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의 처벌을 예정하고 있다. 즉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것이다. 양벌규정의 취지는 해당 법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 있다. 실무상으로는 법인의 책임능력 여하보다는 구체적으로 양벌규정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행위자가 누구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두어진다.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법원의 판례 몇 가지를 살펴해보도록 한다.

### ○ 대법원 판결의 요지

#### 1.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801 판결

구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제16조의2 제1항 소정의 벌

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0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66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축산협동조합의 전무로서 조합업무를 통할하고 일상 업무에 관하여는 위 조합을 대표하는 자로서 환경기사 자격이 있는 인공수정사로 하여금 도축장 폐수처리업무까지 겸하도록 하였는데 그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 폐수처리업무 담당자의 도축장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관리상황을 철저히 감독하지 아니한 지휘·감독상의 과실은 인정될지언정 고의로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구 환경보전법 제70조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597 판결

구 환경보전법 제66조는 같은 법 제16조의2 등에 규정된 사업자인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와 같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위 제66조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이들을 행위자로서 처벌하는 규정이고 같은 법 제70조는 그 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위와 같은 행위자와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인바, 위 법 제16조의2에 정한 사업자인 대학교부속 병원의 대표자를 보좌하여 병원의 시설운영 등 그 관리사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원장이 우 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의 폐수를 위 대학교병원 본원의 폐수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방류하게 하였다면 같은 법 제66조 제1호에 해당한다.

## 3.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두8401 판결

가.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개정 전, 이하 같다) 제60조 제2호, 제25조 제1항이나 같은 법 제61조 제2호, 제24조 제2항의 각 벌칙규정 및 같은 법 제62조의 양벌규정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양벌규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 주체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다만, 여기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라 함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이 오로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노무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306 소재 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이하 '부천교역처'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부평교역처의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부평교역처의 일반적인 통제·감독을 받고 있기는 하나 폐기물처리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 독자적 권한이 있어, 구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 양벌규정에서 말하는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1일 평균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인 부평교역처에 관하여 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부평교역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시·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평교역처에서 위 기준을 넘어서는 이 사건 사업장폐기물(유통기한이 경과된 밀가루, 햄, 과자, 치즈, 음료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또한 신화자원환경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공소외 1이 시·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사업장폐기물을 공소외 1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구 폐기물관리법의 위 각 의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피고인1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의 고의 또는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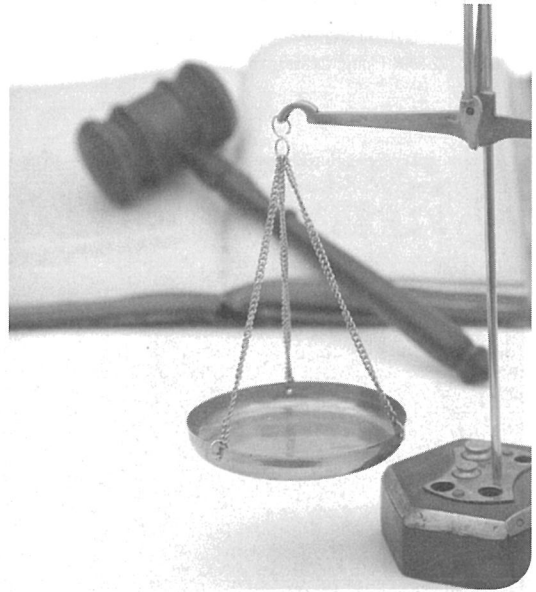
## 4.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63 판결

법인의 대표자를 건축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행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무허가 건축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또는 그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를 묵인 내지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고, 단순히 그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 하여금 무허가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말미암아 허가 없이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를 위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 평가

대상판결에서 본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양벌규정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행위자'란 그 행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

던 자라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 그 판단이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사업주 자신이 비정상 운영행위에 일체 개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나 중간관리자의 처벌은 행위책임의 원칙에 반하므로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상판결<sup>4)</sup>의 입장이라고 할 것이다.



### 법무법인 태운, 중국(북경) 해원변호사 사무실과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법무법인 태운(대표변호사 허범행)은 한국기업이 중국기업과의 MOU체결 및 투자 등 중국관련 사업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지난 8월 29일 중국 북경의 해원변호사 사무실과의 법률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법무법인 태운은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의 중국관련 사업분야에 대한 법률적 검토, 한·중간의 소송, 중재 등 분쟁에 관한 리스크 예방, 해결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법무법인 태운은 앞으로 중국 해원변호사 사무실과의 업무교류를 통하여 한국기업과 중국기업과의 거래의 준비 단계부터 그 후속절차를 종결하는 단계까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의 : 법무법인 태운 02-584-2770)

